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에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규정〉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63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에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규정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9. 25.
3. 회 부 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
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
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
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
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57조제2항 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에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규정

개정안은 현행법 제57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2024.9.26.)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4267호)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 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u><신 설></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용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4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에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음.

나. 검토의견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2024.9.26.)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라 한다) 제47조제2항¹⁾에서는 정부의 기후위기에 따른 사회 안전망 마련 의무에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57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여 소비자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제2204267호)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를」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의 “가격 및 수급안정”의 의미가 농수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²⁾과 같이 가격 안정화 사업 외에 ‘피해보상 방안’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 대하여 불명확한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47조제2항제10호의 “가격 및 수급안정”의 의미를 ‘가격 안정화 사업’만으로 해석할 경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헌법」³⁾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2)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57조제2항 제4호의2 신설).

3)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시 수매·비축 등을 통해 수급 안정 사업⁵⁾을 기시행 중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한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수급안정 사업 추진 내역	투입예산
2020	○ 콩(콩나물콩), 마늘, 배추·무, 밀 5개 품목 수매비축(14,140톤)으로 수급 안정 ○ 참깨, 콩(콩나물콩)·팥(녹두) 등 3개 품목 수입비축(249,889톤)으로 수급 안정 ○ 수급정보 조사·분석 및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대책 지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거래동향 제공으로 물가안정 정책 지원 ○ 겨울대와 출하정지, 가을배추 면적 조절, 봄무 가격차보전 및 과채류(5품목 50천톤)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505,150

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填)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세부사업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비축지원(3031-323)

연도	수급안정 사업 추진 내역	투입예산
2021	○ 콩(콩나물콩), 마늘·양파, 배추·무, 감자·밀 7개 품목 수매비축(49,583톤)으로 수급 안정 도모 ○ 참깨, 콩(콩나물콩)·팥(녹두) 등 3개 품목 수입비축(254,619톤)으로 수급 안정 ○ 수급정보 조사분석 및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대책 지원 ○ 명절(설·추석) 성수품·선물조사 구매의향 조사 등 성수기 물가 안정 대책 수립 추진 ○ 겨울무 출하정지, 여름무·배추 가격차보전 및 과채류(5품목 52천톤)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536,925
2022	○ 콩(콩나물콩), 마늘·양파, 배추·무, 감자·밀 7개 품목 수매비축(86,208톤)으로 수급 안정 도모 ○ 마늘·참깨, 감자, 배추, 콩(콩나물콩)·팥(녹두) 등 6개 품목 수입비축(306,257톤)으로 수급 안정 ○ 수급정보 조사분석 및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대책 지원 ○ 명절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의향·행태 조사 실시로 정부 수급대책 지원 ○ 소비 선호도 변화를 반영한 김장비용 조사기준 변경으로 김장철 물가 안정 대책지원 * 품목 반영, 세계 김치연구소 표준레시피 참고 중량 조정 ○ 양파·가을배추 가격차보전 및 과채류(5품목 55천톤)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안정	831,150
2023	○ 콩(콩나물콩), 마늘·양파, 배추·무, 감자·밀 7개 품목 수매비축(67,460톤)으로 수급 안정 도모 ○ 고추·양파·참깨, 감자, 배추, 콩(콩나물콩)·팥(녹두) 등 7개 품목 수입비축(249,966톤)으로 수급 안정 ○ 수급정보 조사·분석 및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선제적 수급대책 지원 ○ 명절·김장철 성수기 물가동향 정보조사 및 홍보 강화로 수급대책 지원 ○ 여름배추·여름무 출하장려 및 과채류(5품목 60천톤)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	712,767
2024	○ 콩(콩나물콩), 마늘·양파, 배추·무, 감자·밀 7개 품목 수매비축(77,355톤)으로 수급 안정 도모 ○ 고추·참깨, 감자, 배추, 콩(콩나물콩)·팥(녹두) 등 6개 품목 수입비축(199,915톤)으로 수급 안정 ○ 수급정보 조사·분석 및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 명절·김장철 성수기 물가동향 정보조사 및 홍보 강화로 수급대책 지원 ○ 여름배추·여름무 출하장려 및 과실(4품목 102천톤)·과채류(5품목 65천톤)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 ○ 기상영향에 따른 과일·채소류 공급 감소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긴급가격안정지원 사업 추진(국내 농산물 28개 품목 및 수입 과일 12개 품목)	796,22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0. 31.

한편, 안 제47조제1항제10호의 “가격 및 수급안정”의 의미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이 가격 안정화 사업 외에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및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불안정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기 “피해 보상 방안”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규정하는 것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다양한 목적⁶⁾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목적⁷⁾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폭염·가뭄·홍수·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및 복구 비용 등을 「농어업재해대책법」⁸⁾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8)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안 제57조제2항제4호의2는 기금의 용도에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 목적⁹⁾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물’에 관한 사항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¹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이하 생략)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설치·운영 중임.

문 의 처
02)6788-5416

할 수 있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